

자료제공 : 2024. 3. 17.(일)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# 보도자료

담당부서 :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질통합분석센터

대기질통합분석센터장	최용석	02-570-3400
대기질모델링팀장	윤태호	02-570-3401
담당자	안준혁	02-570-3414
관련 누리집	<a href="http://cleanair.seoul.go.kr">http://cleanair.seoul.go.kr</a> (서울시 대기환경정보시스템)	

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: 3매

### 서울시, 17일 13시 기준 미세먼지[PM-10] 주의보 발령

- 17일 13시 기준, 서울시 미세먼지(PM-10) 시간당 평균 농도가  $150\mu\text{g}/\text{m}^3$  이상이 2시간 지속되어 “미세먼지(PM-10) 주의보” 발령

※ 미세먼지(PM-10) : 서울시 25개구 시간평균농도  $174\mu\text{g}/\text{m}^3$ (12시),  $229\mu\text{g}/\text{m}^3$ (13시)

- 호흡기 또는 심혈관질환 있는 시민과 노약자, 어린이 등은 외출 자제
- 실외 활동 및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당부
- 초미세먼지, 미세먼지 등 대기질 실시간 자료는 대기환경정보 누리집 (<http://cleanair.seoul.go.kr>), 모바일 서울 앱 등 참조

-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3월 17일(일) 13시에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하였다. 보건환경연구원은 16일부터 몽골 동쪽에서 발원한 황사가 오늘(17일) 북서풍에 의해 국내 유입되었고 오늘(17일) 우리나라 전 지역에 영향을 주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것으로 밝혔다.

[참고자료 1]

## (초)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시민행동요령

구분	시민 건강보호	대기오염 개선 노력
주의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민감군은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</li> <li>나.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(특히, 눈이 아프거나,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)</li> <li>다. 부득이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(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권고)</li> <li>라.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</li> <li>마. 유치원·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</li> <li>바.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</li> <li>사. 공원·체육시설·고궁·터미널·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</li> <li>아.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감축(비상용차량 제외)</li> <li>나. 자동차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권장</li> <li>다.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</li> <li>라. 주·정차시 공회전 금지</li> <li>마.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시행</li> <li>바.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</li> <li>사.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권고</li> <li>아.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li> </ul>
경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민감군은 외출이나 야외 활동 금지</li> <li>나.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(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 유지)</li> <li>다. 부득이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</li> <li>라.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</li> <li>마. 유치원·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, 수업단축 또는 휴교</li> <li>바. 중·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</li> <li>사.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</li> <li>아. 공원·체육시설·고궁·터미널·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</li> <li>자.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제한 (비상용차량 제외)</li> <li>나. 자동차 운행 제한(부제 운행 등)</li> <li>다.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</li> <li>라. 주·정차 시 공회전 금지</li> <li>마.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강화</li> <li>바.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명령</li> <li>사.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명령</li> <li>아.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li> </ul>

[참고자료 2]

## (초)미세먼지 경보단계별 농도 기준

대상 물질	경보 단계	발령 기준	해제 기준
미세 먼지 (PM-10)	주의보	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, 해당지역의 도시대기측정소 PM-10 시간당 평균농도가 $150\mu\text{g}/\text{m}^3$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	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, 도시대기측정소의 PM-10 시간당 평균농도가 $100\mu\text{g}/\text{m}^3$ 미만인 때
	경보	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, 해당지역의 도시대기측정소 PM-10 시간당 평균농도가 $300\mu\text{g}/\text{m}^3$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	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, 도시대기측정소의 PM-10 시간당 평균농도가 $150\mu\text{g}/\text{m}^3$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
초미세 먼지 (PM-2.5)	주의보	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, 해당지역의 도시대기측정소 PM-2.5 시간당 평균농도가 $75\mu\text{g}/\text{m}^3$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	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, 도시대기측정소의 PM-2.5 시간당 평균농도가 $35\mu\text{g}/\text{m}^3$ 미만인 때
	경보	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, 해당지역의 도시대기측정소 PM-2.5 시간당 평균농도가 $150\mu\text{g}/\text{m}^3$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	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, 도시대기측정소의 PM-2.5 시간당 평균농도가 $75\mu\text{g}/\text{m}^3$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

〈비고〉

- 해당 지역의 도시대기측정소 PM-10 농도 또는 PM-2.5의 권역별 농도가 경보 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 할 수 있다.